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946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가.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17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청년창업꿈터 2호점이 추가 설립할 예정으로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청년창업꿈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신홍합 창조밸리 거점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주거 및 네트워크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신촌,홍대,합정 창조밸리 구축 기본계획
-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및 운영계획

○ 추진 필요성

- 주거와 보육이 동시에 필요한 최적화된 창업환경 제공을 위해 창업분야의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청년창업꿈터 운영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 관리,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창업꿈터 시설관리 운영

- 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라.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창천동 13-90 (신촌역 인근)
- 시설규모 : 연면적 828.09m²
- 시설개관 : '20.2월 예정 (* '20.1월 청년창업꿈터 1호점 민간위탁 종료)
- 기 능 : 공간제공, 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 등
- 보육규모 : 독립형 보육실 18개실
- 소요예산 : 535백만원 ('20년 기준)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개관 준비 기간을 포함하
되, 차기 민간위탁시에는 2년으로 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시설별 세부내역

시 설 명	청년창업꿈터 1호점	청년창업꿈터 2호점
위 치	서대문구 창천동 13-90	서대문구 창천동 13-100
건축규모	연면적 348.6m ²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79.49m ² , 지하1층/지상4층
시설개관	'17.11월	'20.2월 예정
보육규모	독립형 보육실 8개실	독립형 보육실 10개실 내외
위탁기간	2년('20.2월~'22.1월)	2년4개월('19.10월~'22.1월)

마.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활동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창업보육을 위해 청년창업꿈터 1호점 인근에 2호점을 추가로 건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임.

나. 청년창업꿈터 개요

- 서울시는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인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사업¹⁾” 시행의 일환으로 “신촌·홍대·합정 창조밸리 구축 기본계획(2014)”을 발표하고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해 신촌지역 모텔 10곳의 매입을 검토하였음.
- 이 지역은 우수대학(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홍익대 등)이 위치하고 청년 거주 비율이 높고 젊은 창업자가 많아 창업거점지역으로서 기반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예비 스타트업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공유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1) 구로·가산, 홍대·합정, 상암·수색, 동대문, 개포 등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을 박원순 시장은 민선 6기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서울형 창조경제는 서울을 전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보고 G밸리, 상암 DMC 등 5대 거점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임.

- 이에 따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청년창업 결합모델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창업꿈터 1호점”을 서대문구 창전동에 2017년 조성하였음.
- ‘청년창업꿈터’ 1호점은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348.6㎡) 규모로,
 - ▶ 다목적공간과 운영사무실 ▶ 주거와 사무공간 ▶ 공동세탁실, 공용키친 ▶ 다용도 회의실과 쉼터로 구성되었음.
- 2018년 입주기업(8개)의 전체 매출은 15억 3천 9백만원이며, 투자유치는 6억 9천만원, 지식재산권은 37건을 등록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음.
- 서울시는 회의실, 업무공간 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기업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인근에 2호점 대상 물건을 지난해 12월 매입하였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무가 새롭게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에 기존 위탁 사무를 종료하고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2호점)을 새롭게 추가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청년창업꿈터 1, 2호점 개요〉

	
<p>위 치 :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토지 167.9㎡, 연면적 348.6㎡) 공 간 : 8실 위탁기간 : 2017.2. ~ 2020.1.(3년) 사 업 비 : 33억5천만원(시비 25억5천만원, 구비 8억원)</p>	<p>위 치 :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9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토지 167.9㎡, 연면적 348.6㎡) 공 간 : 10실 내외 위탁기간 : 조성 중 (2020.2월 개관 예정) 사 업 비 : 34억8,200만원(국비 4억5백만원, 시비 20억9,500만원, 구비 10억3,200만원)</p>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

- 청년창업꿈터 1·2호점의 경우 각각의 시설에 입주기업을 위한 관리 인력(센터장, 사무인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비교적 소규모 시설이고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일괄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1호점의 민간위탁금(2019년, 2억 6천 7백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 위탁했을 때보다, 통합 위탁할 경우 인건비 1억 9백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²⁾
- 또한,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입주기업 간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는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민간위탁금으로 5억 3천 5백만원³⁾을 편성한 바,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비를 올해 4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기 때문임(5백만원/기업 당 →1천만원).
-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입주기업들은 비좁은 주거 공간과 회의실, 소음 노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인근에 창업 진흥을 위한 산업 레지던스가 조성될 예정⁴⁾임에 따라 서로 연계하여 신촌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창업클러스터로

2) 청년창업꿈터 1호점의 2019년 민간위탁금(2억 6천 7백만원)기준으로 2호점을 개별 위탁할 경우 총 사업비는 5억 3천 4백만원이 산출되었으나 통합 위탁할 경우 3억 8천 8백만원으로 산출되어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음(청년창업꿈터 1호·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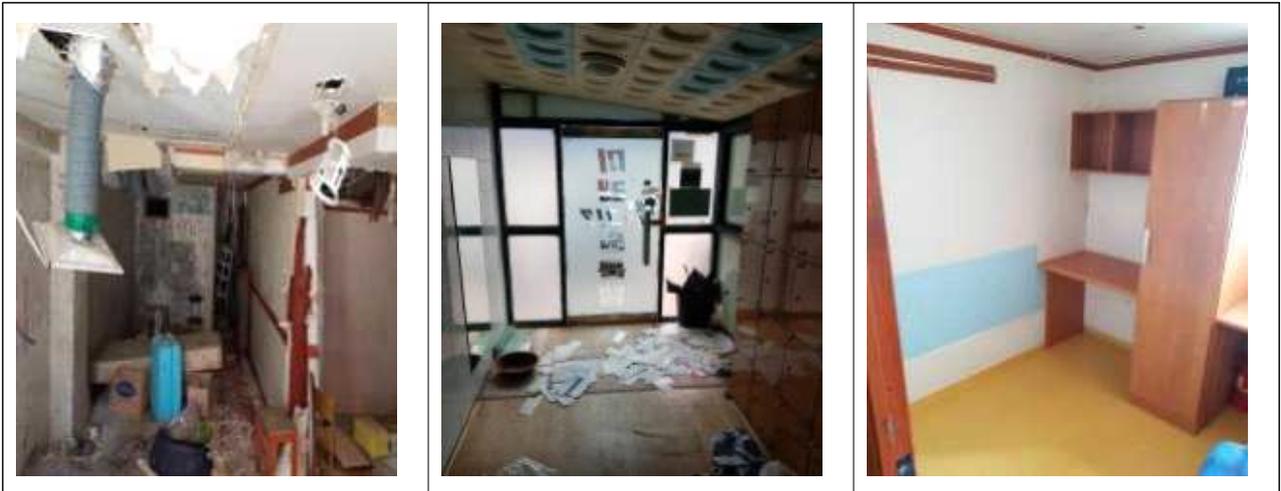
3) 2020년도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금은 ▶직원 5명(센터장 1명, 직원 4명)의 인건비 1억 8,250만원 ▶시설운영비 8,388만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억 6,861만원으로 구성됨.

4) 2020 회계연도에 역세권 일대 공간의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산업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위해 약 232억 6천1백만원을 편성해 5개소의 건물(서대문구 창천동 13-69, 29-14, 마포구 노고산동, 관악구 신림동 1432-28, 1432-98) 매입을 추진할 계획임.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망됨.

- 한편, 2호점 매입이 지난해 12월 이뤄졌으나, 약 8개월 동안 착공없이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뤄져 공유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청년창업꿈터 2호점 현장〉



※자료 : 청년창업꿈터 2호점 2019. 8월 현재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청년창업가의 업무와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창업꿈터 1호·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청년창업가에게 주거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꿈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1 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
- 신흥합 창조밸리 거점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주거 및 네트워크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46호, '15.9.)
- 시장요청사항 : 신촌지역에 10개 창업모텔 구입 및 조성('16.4.)
 - (가칭) 창업모텔 추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16.7.)
-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및 운영계획('18.8.)

□ 추진경위

- 청년창업꿈터 1호점 조성 완료 및 개관 운영 : '17.11.~
 - 위탁기간 : '17.2.1.~'20.1.31.(3년), 수탁기관 : (주)오픈놀
- 청년창업꿈터 추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7.6.~12.
 - 타당성조사 용역 사전심사 실시(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7.11.~'12.
- 청년창업꿈터 2호점 추가조성 공유재산심의 완료 : '17.9.
- 청년창업꿈터 2호점 추가조성 리모델링 공사 : '18.6.~12.

위탁시설 현황

- 꿈터 1호점 : (위탁기간) '17.2.~'20.1. / (수탁기관) (주) 오픈놀
 - 민간위탁유형 : 공모에 의한 신규위탁(시설형)
- 꿈터 2호점 : '19.12월말 준공
 - '20.2월 개관 예정(준공 후 기업입주 등 개관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구 분	꿈터 1호점	꿈터 2호점
위 치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9 ※1호점 인근(약10m) 위치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3층 (토지 167.9㎡, 연면적 348.6㎡)	지하1층, 지상4층 (토지 179㎡, 연면적479.49㎡)
공 간	8실	10실 내외
위탁기간	현재	'17.2.~'20.1.(3년)
	향 후	'20.2.~'23.1.(3년)

2 통합 민간위탁 검토

검토목적

- 위탁시설인 창업꿈터 2호점과('19.12월 준공예정) 창업꿈터 1호점 ('20.1월말 민간위탁 계약종료)이 서로 인근에 위치(10m)하여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 개의 시설을 하나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통합위탁 필요성

-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이용 가능(꿈터 1호점 회의실 등 공유공간 부족)
- 소규모 면적의 보육센터에 입주기업 관리인원(센터장, 사무요원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개별 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

- 인건비 109.5백만원/연 절감(2개소 8명 → 통합운영 5명 배치)

※ 1명 인건비 36.5백만원 소요('19년 예산 기준)

○ **꿈터1호점과 2호점의 입주기업 상호 보유자원 공유 등 네트워크 필요**

※ **장단점 비교**

구 분	개별 위탁	통합 위탁
내 용	◦ 1호점과 2호점 수탁사 각각 선정	◦ 1호점과 2호점을 동일한 수탁사로 선정
소요예산	◦ 534백만원(=267백만원x2개소) ※ '19년 민간위탁금 기준	◦ 388백만원(인건비 109.5백만원 절감)
장 점	◦ 양측 수탁사들의 성과 비교로 사업효과 향상 기대	◦ 인건비 절감(109.5백만원/연) ※ 328.5백만원 절감(3년) ◦ 한정된 공간 효율적 이용 가능(공유개념) ◦ 입주기업 간 정보공유 등 교류 용이 ◦ 통합 위탁으로 시너지 효과
단 점	◦ 사업 분리, 민간위탁 남발 비판 우려	◦ 지점의 특화된 사업 발굴 어려움 (단일 수탁사 운영으로 획일된 사업추진 우려)

검토결과

- (비용적 측면) 민간위탁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인건비 등 위탁예산 절감이 가능한 통합위탁 방법이 바람직함
- (운영적 측면) 효율적인 공간운영, 꿈터 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큰 통합위탁 방법이 효과적임
- (검 토 결 과)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높고 시너지 효과가 크며 두 지점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위탁사무명 : 청년창업꿈터 통합운영
 - 위탁시설 : 청년창업꿈터 1호점, 청년창업꿈터 2호점
- 추진방법 : 꿈터1호점의 민간위탁 종료('20.1월) 도래시점에 신규 조성되는 꿈터2호점을 함께 신규 민간위탁으로 선정 운영
 - 2018년 서울시 민간위탁 처리 지침(17p)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18. 7.)】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 기존 위탁 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입주기업 보육과 시설관리를 각 해당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하여 전문성 강화

- 위탁근거 :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7호 생략)
-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탁사유

- 주거와 보육이 동시에 필요한 최적화된 창업환경 제공을 위해 창업분야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 선정 필요
- 청년창업 주거공간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 업무추진 효율성 고려

○ 위탁기간 : 2년('20.2.~'22.1. 예정)

※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2년 이후 연장여부 추후 결정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신규위탁)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위탁사무 내용

○ 청년창업꿈터 1호점·2호점 주거·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

- 입주기업 심사·선발, 창업 주거공간 운영
- 운영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추진
-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기획, 관리, 홍보 등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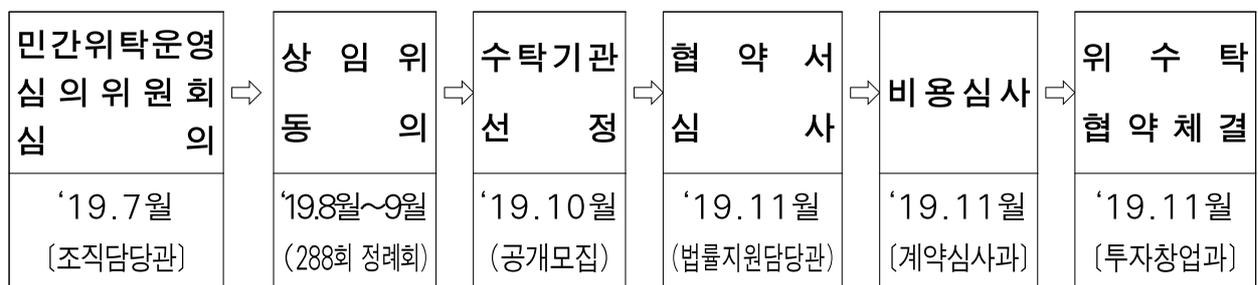
○ 청년창업꿈터 1호점·2호점 주거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청소,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수립

- 인근 대학교 캠퍼스 타운 등 창업시설과의 연계 운영 등

□ 추진절차(신규위탁)



□ 위탁예산('20년) : 535,000천원

※ '19년 꿈터 1호점 예산 267백만원

○ 운영비 : 266,386천원

- 인건비 : 182,500천원(36,500천원x5인)

▶ 센터장 1명, 매너저 4명(1호점, 2호점 각 2명)

- 시설운영비 : 83,886천원(41,943천원x2개소)

▶ 임차료,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 1호점, 2호점 각 41,943천원

○ 사업비 : 268,614천원

- 입주기업 선발, 사업화자금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328백만원/3년)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투입하여 꿈터 운영 내실화

4

추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심의(조직담당관): '19.06.~07.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288회 정례회) 등 : '19.08.~09.
- 수탁기관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10.
- 협약서 체결 등 : '19.11.

붙임 1. 청년창업꿈터 1호점 현황

2. 청년창업꿈터 2호점 현황

3. 민간위탁 관련 규정(민간위탁 관리 지침, 창업지원조례)

청년창업꿈터 1호점 현황

운영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운영기관 : (주)오픈놀
- 위탁기간 : '17.2월~'20.1월(3년)
- 공간구성 현황
 - 지 층 : 운영사무실·공용업무공간·회의실
 - 1~3층 : 주거 및 사무공간·회의실, 공동세탁실
 - 4 층 : 공용키친, 다용도회의실, 네트워크 및 휴식 공간
- 지원내용 : 입주기업 보육,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창업교육 등
- '19년 사업예산 : 268백만원



추진현황

- 수탁기관 선정('17.2.16) 및 세부운영 계획 수립('17. 2~9월)
- 청년창업꿈터 개관식 및 8개기업 입주완료('17.11.13)
- '18년 입주기업 선발('18.8~11월) : 4개팀 10명

'18년 운영 실적

- 8개 입주기업, 매출 1,539백만원, 투자유치 690백만원, 지식재산권 37건 등
- 입주기업 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 10회 22백만원
- 사업화 및 투자역량 강화 교육 8회 및 멘토링 7회 실시
-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사례공유 간담회 23회(384명), 성과보고회 2회

'19년도 추진 계획

- 2기 입주기업 중간 사업평가 및 성과보고회 : '19.5~9월
- '19년(3기)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 '19.10월

붙임2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현황

(※'19. 12월 준공예정)

□ 조성개요

- 위치 : 서대문구 창천동 13번지 100호(미래여관, '91년 준공)
※ '18.11월 매입완료, 청년창업꿈터 1호점 인근(약 10m)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토지 179.2㎡, 연면적 479.49㎡)
- 공간구성(안) : 주거 및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 사업비 : 3,350백만원
※ 매입비 2,400백만원 (국비 405백만원, 시비 1,995백만원),
설계 및 공사비 900백만원 (전액 구비)



〈창업꿈터 2호점, 10m인근 위치〉



〈창업꿈터 2호점〉

□ 추진일정

모텔 매입 (완료) (18.9~11월)	· 계약, 부동산 등기·소유권 이전 등
↓	
기본 및 실시설계(진행중) (19.4~5월)	· 기본 및 실시설계(서대문구)
↓	
공사발주 시행 (19.6~11월 예정)	· 리모델링 공사(서대문구)
↓	
시설 준공 ('19.12월중)	· 청년창업꿈터 2호점 준공
↓	
시설 개관 ('20.2월중)	· 청년창업꿈터 2호점 개관 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